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확인 체크리스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별표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①등록 신청서(신규사업자는 신규등록신청서, 재등록은 변경등록신청서) ②구비서류 ③등록요건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관할 지방전파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등록 문자사업자 재등록 시스템 개선 작업중으로 재등록 사업자에 한해 7월말까지 전자민원 접수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이메일 신청서 접수시 제출하신 자료의 보완 요청을 위한 담당자 휴대폰 및 담당자 E-mail이 필요하오니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보완요청시 담당자에게 문자 알림 및 이메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MS 수신동의

☐ 동의 ☐ 미동의

▶ E-mail 수신동의

☐ 동의 ☐ 미동의

※ 등록요건 미충족 및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용량 첨부가 아닌 일반 첨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개별파일은 5MByte를 초과하지 않을 것(시스템 부하))

※ 세부 문의사항은 관할 지역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대표전화/이메일	관서명	대표전화/이메일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53,1751,1755,1750 crmsmunja@korea.kr	대구전파관리소	053-749-2817 head1433@korea.kr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117 munjabusan@korea.kr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105 jbmunja@korea.kr
광주전파관리소	061-330-6820 valcancba@korea.kr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19 jcb1520@korea.kr
강릉전파관리소	033-660-2817 chaeheuiil@korea.kr	청주전파관리소	043-261-5854 yuuzin@korea.kr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32 nhw117@korea.kr	울산전파관리소	052-231-8882 happyhs82@korea.kr

□ 등록요건 확인 [시행령 제29조제9항 별표3]

※ 제출서류는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문자) 등록서류 작성요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등록요건 항목별 증빙자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체크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의 화면 캡처본은 사업자의 서비스 URL 또는 자사 시스템 여부(로그 등)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 문자중계사(이통사와 직접 계약)인 경우 증빙자료⑧⑨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1.3. 항목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 계획서로 제출 가능

구분	제출서류	확인(O/X)
0. 신청인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정관(법인사업자)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방지 - 증빙자료 ①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계획 및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 인증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사업자의 서비스 화면에 인증 방법이 표시가 되어 있는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	
1.1.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 증빙자료 ③④⑤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가 적용된 사업자의 서비스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 사전에 등록된 번호 이외의 발신번호를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내용 및 적용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	、
1.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 증빙자료 ⑥⑦⑩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서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한 적용된 서비스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칭전화 신고 관리 시스템에 업체 및 담당자가 등록된 화면을 캡처한 서류 제출	
- 증빙자료 ⑧⑨⑩ * 문자중계사인 경우만 제출	문자중계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 번호로 사용된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 문자중계사업자는 변작번호 차단 결과 전송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서(계약서) 사본(직접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개발 규격서 등 관련 증빙자료) 문자중계사업자는 차단 결과 전송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시스템 연동이 되어 있는 로그 제출	
1.1.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 보관 - 증빙자료 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대한 통신 이력을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서	
1.1.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 - 증빙자료 ㉔	문자메시지 통신이력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기 위한 조치	
1.1.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위·변조 방지 - 증빙자료 ㉔	인터넷 문자발송 장비(시스템) 내 식별코드 적용 화면 캡처	
1.1.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위·변조 방지 - 증빙자료 ㉔	인터넷 문자발송 현황 자료 제출(지정서식㉔)	
1.2.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 [붙임 5, 6, 7, 11, 17, 18]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웹방화벽, 웹쉘탐지, DB접근통제, DB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방화벽(웹방화벽) 정책(Rule Set) 증적 - IPS/IDS 설치·운영 현황 - 방화벽, 웹방화벽, 웹쉘탐지, DB접근통제, DB암호화 등의 업데이트 현황	
1.2.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 [붙임 4, 10, 12, 13, 19, 20, 21]	- 정보통신설비 목록(서버,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DB, 관리용 PC, 개발용 PC, 웹 어플리케이션 등)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보고서 - 패치현황 및 보안패치 중단된 운영체제 교체 계획 수립 이행 현황 - 위탁업체의 취약점 정기점검 보고서(반기/년간) - 업데이트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1.2.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 [붙임 8, 9, 10, 14]	- 정보통신설비 목록 - 계정/비밀번호 관리대장 - 서버별(웹서버, DB서버, 백업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 서비스 포트 현황 - 접근권한(사용자) 관리대장 - 정보보호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	
1.2. 로그기록 자료 유지 - [붙임 15, 16]	- 로그분석 수행 결과 기록 - 식별된 중요로그 목록 - 로그분류를 위한 기준 또는 지침 - 로그 보존 화면 증적(1개월 또는 3개월) - 로그 관리 현황표 - 백업 현황 및 복구 관리대장	

1.3.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관련 기술적조치	악성문자 차단체계 가이드라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문자) 등록서류 작성요령 붙임3 참고)하여 기술적 조치계획서 제출	
2.1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인력 지정 - 증빙자료 ㉔	발신번호 변작방지 담당자 명부 4대보험 증빙서류	
2.2.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 증빙자료 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공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품의문서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 등) 각 1부	
2.3.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 구비 여부 - 증빙자료 ㉔	사업용 주요 설비 내역,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문자발송 체계* 설명 자료, 사업자 홈페이지 화면 및 문자서비스 화면을 캡처한 서류(증빙자료 지정서식 ㉔)	
3. 재무건전성 - 증빙자료 ㉔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잔고증명서, 사업용 사무실 임대계약서	
4.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㉔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	
5. 이용자보호계획서 - 증빙자료 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이용자보호 계획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는 조치(보안서버 설치 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서비스 약관 제정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이 명시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이 명시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명시 -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명시 등	
6. 전송자격인증서 - 증빙자료 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 사본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등록요건 심사 및 사후관리(정기점검)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등록신청 시부터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시까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목적 : 등록요건 심사 및 사후관리(정기점검) 활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등록신청 시부터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시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공동이용의 목적 : 등록요건 심사 및 사후관리(정기점검) 활용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외)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대법원(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국세청(사업자등록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등록요건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